



본인은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신청 및 약정 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 (1) 대출기간 : 보험계약대출 대상 계약의 보험기간
 - (2) 대출한도 : 보험계약대출 대상 계약 해지환급금의 최대 95%이내 (추후 변경 가능)
 - (3) 이 자 율 : 【 고정금리형】 기준금리(예정이율) + 1.5 / 2.0 % 【 금리연동형】 기준금리(공시이율) + 1.5 / 2.0 %
 - (4) ※ 단, 사업방법서에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이자 미납시 처리기준 : 이자 미납시 정상이자와 구분하여 미납이자로 분류하고, 그 이후 미납이자에는 정상이자율이 적용됨.
- ※ 변제의 사유 및 상계, 차감처리, 주소변경 통지의무 등은 약정서 제2조부터 제11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유구생	생년월일/사업자번호	631105		처리구분	신규대출						
(단위:%,원)												
증권번호	상품명	기준금리 (A)	가산금리 (B)	적용금리 (A+B)	금리 구분	기대출금액	대출신청금액	이자	인지세	실지금금액	대출후 잔액	전표번호
289091593005	브라보라이프보험0904	1.45	2	3.45		0	100,000	0	0	100,000	100,000	

대출신청금액	100,000	실지금액	100,000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삼성세무서장 후납승인 2004년 2호	
위 금액을 정히 영수 (지급) 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신청인(영수인)	(서명/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대출금 송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이자납입일	예금주명	주민번호(생년월일)
	경남은행	111111111111111	15	유구생	631105-*****
연락처	자택	휴대폰	이메일		
주소					
안내문수령방법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문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DB손해보험의 모든 고객 정보 변경시에만 작성				
보험계약대출 안내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보험업감독규정등에 따라 미납사실에 대하여 안내 됩니다.					

본인은 대출한도, 이자율, 미납이자, 이자납부시기, 본인의 주소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 또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계약의 (소멸사유) 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차액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됨을 이해함. (자필) 이해함
 본인은 보험계약대출(약정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약정서 내용과 같이 대출약정서를 교부 받았습니니다.

_____ (서명/인)

상대과목		처리지점	시스템운영센터	처리사원	송손심
실명확인자	(인)	경리담당자	(인)	책임자	(인)
고객상담센터	1544-0100	출력자	송손심	11304830	



제2조 (정의)

- (1)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보험계약대출의 담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보험계약대출금"이라 함은 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회사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대출기간 및 원리금상환)

- (1)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내로 하되, 종료일 이전에 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2)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개시 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전부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상환을 못하여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으로 인해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 한도는 "(연금 지급시점의 해지환급금 - 세금) × 한도비율"로 계산합니다.

제4조 (대출이자납입 등)

- (1)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은 해당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 등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등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며,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등의 변동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3) 보험계약대출이자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 해당일(이하 "이자납입일"이라 한다)에 납입하며, 이자납입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은 미납이자로 분류됩니다.
그 이후 이자는 원금과 미납이자에 각각 부과되며, 미납입한 이자와 그 이후의 이자를 합산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 (4) 이자납입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영업일에 이자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5) 이자의 납입방법은 은행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계좌 잔액이 회사의 청구액(정상/미납이자 포함 출금전일까지의 이자)에 미달할 경우 이체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금액을 전화이체나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 등)를 이용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6) 이체일에 동일한 여러건의 자동납입 이자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 우선 순위는 해당은행이 정한 순서에 따르며, 이로 인해 이체 순서의 뒤바뀜에 따른 이자 미납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 (7) 이체일 대출이자의 자동이체 출금시간은 각 금융기관(은행)에 따라 다르게 인출되므로 이체일 전일까지 통장에 예금잔고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기타 사유로 자동이체 출금일에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10일 단위로 재청구 됩니다.
- (9) 보험계약대출 실행일에 상환 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이자를 수납하여야 합니다.
- (10) 동일 증권 추가대출시 기대출원금에 대한 전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한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제5조 (변제의 사유 및 절차)

- (1)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 ② 2003.10.1부터 2005.3.31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 보험계약이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③ 2005.4.1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대상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 (2) 제1항 2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 7영업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해지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계약자는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4) 대출원리금 초과분에 대한 상환의무는 실효, 해지 이후에도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컨버전스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장 부분의 해지환급금 감소 및 대출 원리금의 담보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실효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보장 부분의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계약을 상계/해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원리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계약자의 최종주소지로 회사는 해지일 7영업일 전까지 해지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6조 (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제보험금, 반환보험료, 해지환급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본인이나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 합니다.

제7조 (보험계약의 소멸)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 합니다.

제8조 (주소 등 변경통지)

- (1)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단,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인지세의 부담)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는 각 50%씩 회사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 (대출계약철회)

- (1)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	-----------------	------	----------	------

※ 당사 인지세 부과 기준 : 계약증권별로 일일누적 합산한 금액에 부과합니다.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보험회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상품과의 구별되는 특징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달리 ①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않고, ②대출심사가 없어 고객이 신청 즉시 지급되며(변액특별계정 대출은 D+2일 지급), ③보험기간 동안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의 실행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④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⑤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는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권에서만 운용하는 특수한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상품은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 지수) 등을 기준 금리로 사용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고객님이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부리이율을 기준 으로 대출금리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부리이율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에 다른 대출상품과 반드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Q2.대출이용과 신용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그 "합산된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실행 당시 대출금리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합니다.

또한,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험료 미납으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은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보험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상이하오니, 해당 조항(6.즉시변제)의 상세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상담· 분쟁조정 연락처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dbins.com) 또는 고객센터(1588-0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의 개요 및 유의사항

상품명	보험계약대출	대출기간	대출실행일부부터 보험계약 만기일까지
대출신청금액	100,000	대출실행 예정일	2022.06.21
적용예정금리	3.45%	담보종류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금리적용방식	연동형	보험계약대출 상환방법	만기일시

2. 보험계약대출 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부담금액

인지세 - 고객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각 50%)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보험회사가 각각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 부담액	인지세액	고객부담	회사부담
5천만원 이하		비 과 세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한 인지세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전화 등으로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대상 비대상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보험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업법 제110조의3)를 말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의 신용상태(개인신용평점, 재산상황 등)와 무관하게 고객님의 보유한 보험계약의 적립금 부리이율 등에 금리가 결정되며,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가 보험계약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이므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라.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구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보험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이자율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고객이 보유한 보험계약에 따라 고정금리방식, 변동금리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금리확정형(고정금리)	금리연동형(변동금리)
운용형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 금리확정형 보험상품 가입시	▶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가입시
내 용	▶ 보험계약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변동주기(통상 1년)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대출금리	▶ 보험계약별 해지환급금 부리이율(예정이율) + 가산금리(1.5%~2.0%)	▶ 보험계약별 해지환급금 부리이율(공시이율) + 가산금리(1.5%~2.0%)

대출금리결정(변동)요인

대출금리는 보험계약별 해지환급 부리이율과 가산금리로 산정됩니다.

보 험 계 약 대 출 금 리	=	해지환급금 부리이율 · 금리확정형(고정) : 예정이율 · 금리연동형(변동) : 공시이율	+	가산금리 ① 원가요소 (인건비, 인쇄비, 전산처리비 등) ② 유동성프리미엄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 등) ③ 목표이익률

해지환급금 부리이율은 보험계약별 해지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붙이는 이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리확정(고정)은 예정이율, 금리연동형(변동)은 공시이율을 의미합니다.

- 예정이율 : 보험계약 체결시 해당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키로 미리 약정한 이율(고정)
- 공시이율 :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 수익률이 반영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별 조정률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매월,분기별,매년 등)마다 고객의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율



가산금리는 보험회사가 대출취급에 다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 아래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 원가요소 : 업무원가(인건비· 인쇄비· 전산처리비 등), 세금(교육세 등) 및 준조세성 부담금(보증기관 출연료 등)등
- 유동성프리미엄 : 보험계약대출을 위한 예비유동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등
- 목표이익률 : 보험회사가 설정하는 수익률

변액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고정금리로 운영되나, 일반계정에서 대출받는것으로 계정전환을 하신 경우 또는 2016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변동금리로 운영됩니다.

5. 대출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보험계약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지만 부담하는 방식"

- ▶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고객은 대출기간 내에 **언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금액· 이자율· 시기

보험계약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되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하며,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원리금 부담액 예시(1천만원을 5% 이자율로 24개월간 대출한 경우)

상환방식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만기 일시상환	11,000,000원	▶ 1회 ~ 23회 : 41,666원(이자만 납부) ▶ 24회 : 10,041,666원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부일에 납부하며,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보험계약대출 원금에 가산합니다. 그 이후의 이자는 미납이자 가산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계산됩니다.

고객은 대출기간 내에 언제든지 중도상환수수료없이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6. 즉시변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 ②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때
- ③ 보험계약이 미납해지되어 부활 청구기간이 경과될 때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해지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고객은 그 초과분을 즉시 상환해야합니다.

보험계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되며,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됩니다.

7.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보험계약의 만기일(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까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계약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8.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납부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그 "합산된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실행당시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담보권 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확인

- ① 보험계약대출은 고객님의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부리이율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설명을 들으셨나요? 예 아니오
- ② 2019년 7월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어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설명을 들으셨나요? 예 아니오
- ③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금액에 따라(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설명을 들으셨나요? 예 아니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설명을 이해했다면 확인 서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DB손해보험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전화대출약정의 경우 동의 녹취로 확인 서명을 대신함을 확인합니다.

고객 확인	2022-06-21	유구생	(서명 /인)
-------	------------	-----	-----------